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81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김정재 · 이인선 · 서명옥
박충권 · 박덕흠 · 김선교
김기현 · 이달희 · 김은혜
최보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써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5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02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202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p> <p>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10. (생략)</p> <p><u><신 설></u></p> <p>11. ~ 14.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p>법률 제21202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p> <p>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0의2.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u></p> <p>11. ~ 14.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 ----- ----- ----- ----- ----- -----</p>

를 둔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② ~ ⑦ (생략)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6. (현행과 같음)